

문서번호	BSKS-1-1-41
제정일자	2016.12.01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5

2016.12.01.제정 2017.09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4.2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11.24.개정 소관부서 교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에 의거 조기취·창업자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2조(적용대상) ① 학점인정의 적용대상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부산경상대학교 재학생으로 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중 국내·외 산업체에 조기취업(인턴 및 수습사원 포함)을 한 자 및 창업한 자를 말한다.<개정 2019.07.16., 2022.11.24.>
 - ② 조기 취업을 하지 않은 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, 출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①항의 조기취업자에 포함한다.<항 신설 2017.09.01.>
 - ④ 졸업 예정 마지막 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계절학기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해야한다. 단, 계절학기 종료시까지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급학기(차기수 강학기)의 조기 취·창업자 학점인정 및 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.<항 신설 2022.11.24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인정
- 2.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인정
- 제4조(학점인정 시기 및 평가) ① 조기 취·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다음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19.07.16.>

			학사운영](각 교과별)		
취업시기	주차					
11 日 171	1 2 4	취업과제		평가방법		
		기 합작세	일반과제	중간고사	기말고사	
수업일수 1/4선 미만	1주~3주	3과제 이상	일반학생과	실시 혹은	실시 혹은	
수업일수 1/4선 이상~3/4선 미만	4주~11주	2과제 이상	동일하게	대체 과제물	대체 과제물	
& Al Al & 0 (43) 11 =	107 157	4-1 1 .1 .1	수행	1과제 이상	1과제 이상	
수업일수 3/4선 이후	12주~15주	1과제 이상	1 0	부과	부과	



문서번호	BSKS-1-1-41
제정일자	2016.12.01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5

- 제5조(학점인정 절차)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조기취·창업자는 취업확인서〈별지서식1〉를 작성하여 학부모,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학과에 제출하며, 해당 학과는 이를 토대로 학과 조기취업 심의 회의록 <별지서식2>를 작성하여 학생산학취업처 및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>
 - ② 취업확인서를 제출받은 학생산학취업처 및 교무처는 이를 자체 보관하여 취업자 현황 파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, 사본은 해당 학과에서 보관 한다.<개정 2020.09.25.>
- **제6조(제출서류)** ① 조기 취·창업자의 학점인정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19.07.16.>
 - 1. 취업확인서 [별지서식 1]
 - 2.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
 - 3. 경력증명서(조기취업자 중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)
 - 4. 학과 조기취업 심의 회의록 [별지서식 2]
 - 5. 기타 학과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
 - 6.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(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신규등록자에 한함)<신설 2019.07.16.>
 - 7. 인턴 및 수습사원 확인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<신설 2019.07.16.>
 - ②조기취업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유 발생 전 · 후 30일 이내에 교무처로 제출해야 하며, 사본은 해당 학과에서 보관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③조기취업자는 학기 초(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시점) 및 학기 말(학기 중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)에 각각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한다.(2회 이상)
- **제7조(준수사항)** 해당학과는 조기 취업자의 효율적인 학점인정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.
 - 1. 취업 증빙서류에 의거한 취업자 및 미취업자 확인 철저
 - 2. 미취업자의 출석 및 수업관리 철저
 - 3. 제4조에 의거한 학점인정
 - 4. 취업증빙 및 평가자료 구비 철저
 - 5. 조기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는 중 퇴직한 경우 즉시 수업에 복귀해야하며 미복귀 시 결석으로 처리된다. 단, 근무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

문서번호	BSKS-1-1-41
제정일자	2016.12.01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5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『산학처』를『산학취업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1
제정일자	2016.12.01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4/5

[별지서식 1] 취업확인서

조기취업 확 인 서

학 과				학 번		학 년	
성 명			(인)	생년월일	년	월 일시	생
	집				산업체명		
연락처	Mobile			취 업	근무부서		
	회사전화			산업체	주소		
취업일	년	월	일		연락처		
	과목미	경	이수구분 (교양·전공	학점 ·)	담당교수	확인(서명)	비고
교과목							
계	on A 41 (1.51			학점			

■ 조기취업생 유의사항

조기취업신청은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, 졸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기 바라며, 조기취업 후에도 꾸준히 졸업요건 확인 및 수강과목 학점이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수강 신청한 과목의 교수님들과 출석, 과제, 시험에 관한 상의를 하여야 하며 조기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출석으로 인정된다거나 일정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공지합니다.

■ 조기취업생 준수사항

- 1. 졸업이전까지는 직장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퇴사를 결정할 수 없으며, 만약 퇴사했을 경우에는 자가취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엄수하지 않을시는 졸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위장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F 처리하고 유급시킨다.
- 3.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확인서에 필히 학부모(보호자)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학생성명]	0	지도교수	(9)
보호자성	명	1	학과장	1
첨부서류	ㅇ 4대	보험 가입 산업체 : 재조 보험 미 가입 산업체 : 자 산업체 : 취업비자 등 이]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혀	·



문서번호	BSKS-1-1-41
제정일자	2016.12.01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5/5

[별지서식 2] 학과 조기취업 심의 회의록

()과	조기취업	심의	회의	로
(/ · I	 /	П - Г		_

1. 취업 예정자 현황

		T .						
학과					학 번			
성	명		연락처			이메일		
취득학	점			잔여	취득학점			
		회 사 명						
		근무부서						
취업회사		담당업무						
		고용형태	□ 정규직		□ 임시직		인턴	
	전	공일치 여부						

2. 해당교과목

과목명	이수구분(교양·전공)	학점	담당교수명	담당교수확인여부

3. 학과 심의/의결 내용

	상기 학생은 000기업에 0학년 2학	기에 조기 취업하였습니다. 학생은	000의 지도하에 000분야의 업무를
	하기 위해 인턴(), 계약직(),	정규직() 으로 0000년 00월 00일	밀 취업하였습니다. 학과에서의 운영
	전공과 완전일치(), 불일치()	하지만 000학생이 지금까지 학습힌	: 내용을 전개하고 활용하기에 적합
	한 분야의 업무라 판단됩니다. 또한	· 학생의 적성과 발전정도를 생각할	때 본 기업의 취업은 학생의 미래
	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. 00)()학생은 2학년 2학기 현재 000과목	-(교수 000), 000과목 (교수0000) 등
심의 내용	총 00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. 이	들 교과에 대해 학과는 해당교수와	상의하여 출석미달에 따른 과제부
집의 대중	과(타학생에게 부과하는 과제물 외약	에 출석을 대체하는 별도과제물을)를	를 통하여 학생이 취업으로 인한 출
	석미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교과	수업 결손을 보충시키도록 하겠습니	다. 개별 과제에 대한 사항은 해당
	교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여 학생에게	ll 부과하도록 요청하고 과목별로 ö	내당 교과 교수가 근거자료를 1년간
	보관하게 하여 수업결손의 보충근거	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상기	과제와 더불어 중간고사, 학기말고
	사 등 정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	사정상 정기시험에 응할수 없을 경	우 별도시험 혹은 별도과제를 통해
	평가를 받도록 해당교과목 교수에게	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.	
학과교수회	(서명)	(서명)	(서명)
(자필서명)	(서명)	(서명)	(서명)
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.

2016년 월 일

학과장 : (서명)